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제출년월일 : 1999. 11.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21세기 힘찬 중구 건설을 위하여,
-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旗)의 규격과 모양,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 게양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구기의 규격과 모양,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 --- 조례안 제2조
- 구기의 게양방법 --- 조례안 제3조
 - 구의 기관,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음.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99. 10. 11 ~ 10. 31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및 규격 등)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구기의 게양) 구기는 구의 기관,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준용) 구기의 제작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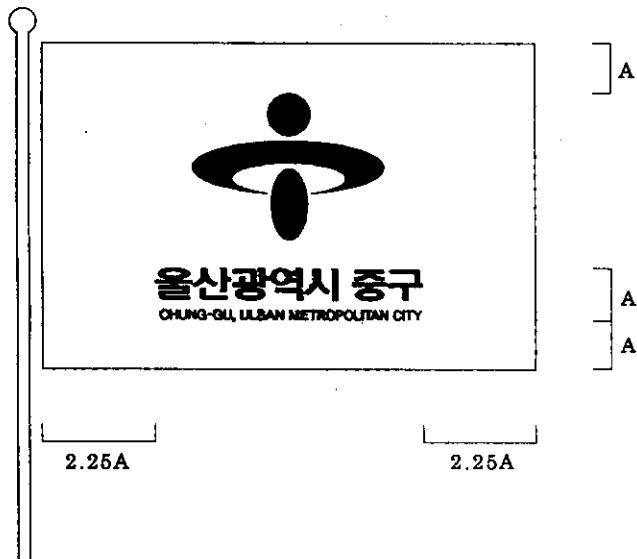
[별표1]

1. 구기의 규격 (가로 : 세로 = 3 : 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상단의 원형은 빨강색 (DIC 156)

(3) 중앙은 파랑색 (DIC 641)

(4) 하단의 타원형은 녹색 (DIC 2561)

(5) 글자는 검은색 (DIC 556)

3. 구기의 표현내용

가. 중구의 심벌마크는 중앙을 나타내는 한자의「中」에서 유추한 것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민과 행정의 화합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하는 자세를 하고있음.

나. 상단의 빨강은 구민과 행정의 열정과 태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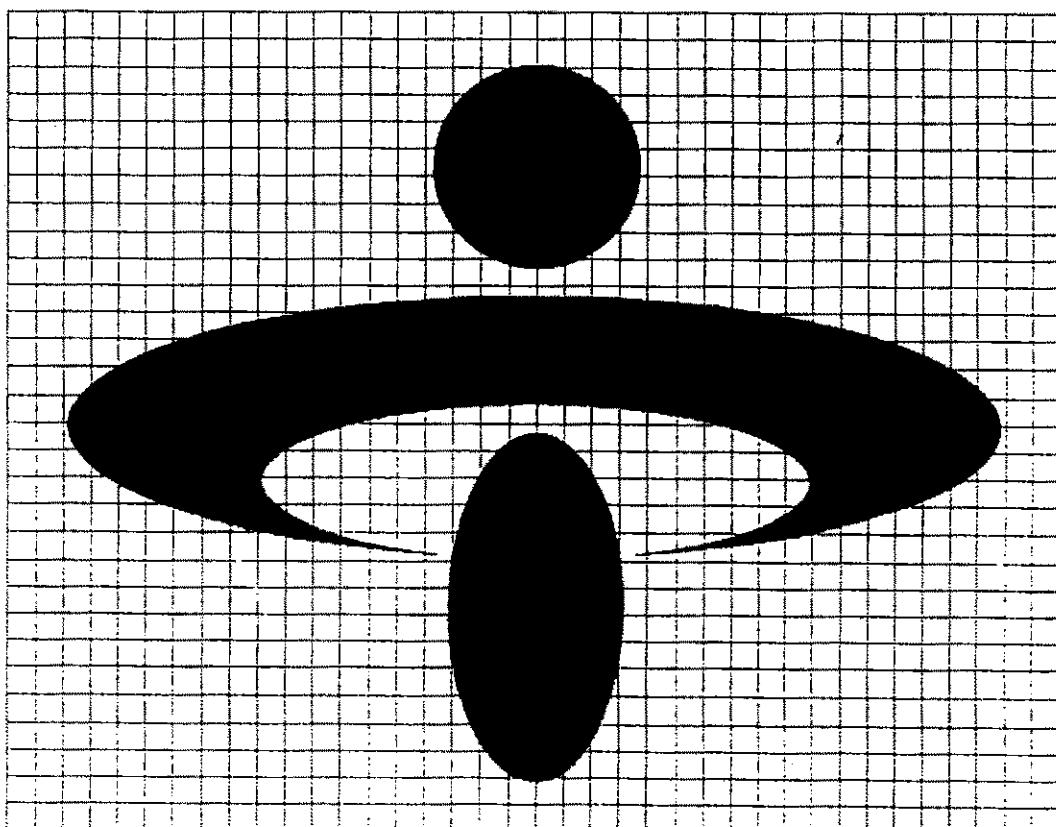
다. 중앙의 파랑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편의 행정을 나타내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표현.

라. 하단의 녹색은 쾌적한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의지를 표현.

[별표2]

1.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의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2.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항에 제시된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가. 심벌마크



나. 로고타입

울산광역시 중구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9. 11. 4.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9. 11. 5.

라. 위원회 상정 : '99. 11. 13.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 우리 구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21세기 힘찬 중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의 규격과 모양,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 게양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 기관,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과 구청장이 정하는 날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장동철)

○ 본 조례안은 중구 고유의 이미지 부각과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구를 상징하는 기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기의 규격과 모양, 기의 작도법, 게양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